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3. 23.(수)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3. 10.

나. 제 안 자 : 김진규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 : 2022. 3. 11.

라. 상정일자 : 제278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2년 3월23일 상정・의결)

○ 제안설명 : 김진규 의원

○ 검토보고 :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
○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○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～제6조)

○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7조)

○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○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제정의 법적근거

○ 이 조례안은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(2021.6.15. 제정, 2022.6.16. 시행)에서 "가사근로자" 뿐만 아니라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"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"(직업소개소, 온라인 플랫폼 등 비공식 영역을 매개로 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)까지 포함하여 "가사근로자 등"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관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[1]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"주민복지에 관한 사무"에 해당되고, 상위법령인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고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[2]에 위배됨이 없는 등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함.

시도명	조 례 명	제정일	시행일
광주	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	2021. 7.23.	2022.6.16.
충남	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9.30.	2021. 9.30.
울산	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	2021.12.29.	2022.6.16.
서울	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2. 3.10.	2022.6.16.

□ 주요검토 내용

○ (안 제1조) 조례의 목적

- 안 제1조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

---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인천시 관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임.

○ (안 제2조) 용어의 정의
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호(가사서비스) 및 제2호(가사근로자)는 **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(이하"가사근로자법"이라 함)」**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정의하였으며,

제3호(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)는 「가사근로자법」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법인을 통하지 않고 「직업안정법」에 의한 직업소개, 온라인 플랫폼 등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함.

용 어	뜻
가사서비스	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, 세탁,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·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
가사근로자	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
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	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
가사근로자 등	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 (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모든 사람)
가사서비스 제공기관	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법인
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	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 (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"사용자")
입주가사근로자	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

○ (안 제3조) 시장의 책무

-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"가사근로자"의 고용안정 및 권익 향상 만이 아닌 "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"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용조건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(안 제5조)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

- 안 제5조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, 지원계획은 **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6조**[3]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.

  다만,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시는 2021년에 이미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는 바,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  한편, 안 제5조제1항제3호에 잘못 표기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함.

---

3) **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(노동정책 기본계획)** ① 시장은 비정규직, 저임금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,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노동정책 기본 방향
2.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
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
4. 노동 관련 조사·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
5.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지원계획) ①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가사근로자 등의 **지원 지원에 필요한** 재정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	제5조(지원계획) ① (제정안과 같음) 1. ~ 2. (제정안과 같음) 3. ---------- **지원에 필요한** ------- ----------

○ (안 제6조) 실태조사

-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.

○ (안 제7조) 지원사업

- 안 제7조제1항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해 자문 및 정보제공, 교육·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

- 안 제7조제2항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교육·홍보·조사·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(안 제8조) 위탁 및 사업비 지원 등

- 안 제8조는 안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**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**[4]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를

4) **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**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30.>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마련하는 사항이며,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단체에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.

○ (안 제9조)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

- 안 제9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,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1조에서 규정한 "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"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노동권익에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의 통합 운영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
○ (안 제10조 및 제11조) 협력체계 및 시행규칙

- 안 제10조는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, 지방고용노동관서,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,
- 안 제11조는 가사근로자 등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

○ (안 부칙) 조례의 시행일

- 「가사근로자법」은 2021.6.15. 제정되어 2022.6.16. 시행 예정으로 안 부칙의 조례 시행 시기를 법 시행일에 맞춰 2022년 6월 16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제 정 안	수 정 안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**이 조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**

□ 종합검토의견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「가사근로자법」에서 규정한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상위법이 작년 6월 제정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노력은? 가사근로자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함.

⇒ (노동정책담당관) 아직은 고용안정을 위한 기초적인 부분임.

○ 가사근로자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되었는지? 비용추계서상 위원회 참석수당은 중복 추계된 것이 아닌지?

⇒ (노동정책담당관)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면 약 6,6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, 비용추계는 중복된 사항으로 보임.

○ 고용이 불안정한 가사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취지는 공감하며, 인천시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.

⇒ (노동정책담당관) 노력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5명(조광휘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안 제1조 중 “한다,” 를 “한다.” 로 수정 ○ 안 제5조제1항제3호 중 “지원 지원에 필요한” 을 “지원에 필요한” 으로 수정 ○ 부칙을 “이 조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” 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❑ 붙임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1부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한다,”를 “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3호 중 “지원 지원에 필요한”을 “지원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이 조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**한다,**	**제1조(목적)** ----------**한다.**
제5조(지원계획) ①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가사근로자 등의 **지원 지원에 필요한** 재정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	**제5조(지원계획)** ① (제정안과 같음) 1. ~ 2. (제정안과 같음) 3. ---------- **지원에 필요한** ----------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**부칙** **이 조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**

[붙임3]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가사서비스”란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.
2. “가사근로자”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.
3. “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”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직업안정법」에 따른 직업소개, 가사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가사근로자 등”이란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.

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, 권익 향상, 쾌적한 노동환경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

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)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
2.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
3.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
2.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지원
3.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,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·홍보
2.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
3. 그 밖에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위탁 등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의

일부를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·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9조(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)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2.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10조(협력체계)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